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근거 마련〉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주민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동물학대 및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동물로 등록된 개체 수는 약 350만 마리(3,491,607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2년에 비하여 약 43만 마리(437,265마리)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동물 등록 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등록 현황	302,597	271,173	259,909
개	290,958	257,989	245,236
고양이	11,639	13,184	14,673
누적 등록 현황	3,054,342	3,286,216	3,491,607
개	3,025,859	3,244,234	3,434,624
고양이	28,483	41,982	56,9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이러한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도 2024년 기준 23,565개로 전년대비 2,900여개 증가(14.5%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업소 중 동물미용업이 10,17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동물미용업과 관련한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동물미용학원의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이러한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미용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동물미용학원은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실습대상이 될 동물들이 필요하나, 실습 동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번식장 등 불법 사육시설에서 강아지 등을 대여하여 실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습생들의 미흡한 미용 실력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가위에 상처를 입는 등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¹⁾.

□ 현행 「동물보호법」 제73조²⁾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으로서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³⁾는 동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영업소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 1) 한송아, “우리는 ‘곰돌이킷’연습 인형이 아니에요”... 미용 실습견들의 실태, 뉴스1, 2025.9.12.
최형순, 세종시 미용실습 사육견 58마리 구조·보호조치 완료, 충청뉴스, 2025.9.18.
이상엽, 번식 못하자 미용 실습견...견주 “죽이지는 못하니깐”, jtbc, 2025.9.25.
남형도, “가위에 살 뚫린 강아지”... ‘미용실습견’을 구했다, 머니투데이, 2024.11.23.

- 2)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동물미용업

- 3) 「동물보호법」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⑤ 생략

□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일반서비스 계열의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에 해당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u>학원의 교습과정</u>(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이러한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에 대한 미용을 교습하기 위하여 실습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미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 등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는 등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교습 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물 학대 등의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 보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대상을 ①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②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조4)에 따라 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불명확한 개념을 학원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4)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동물미용학원에서는 실습 대상인 동물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상해를 입힌다거나, 불법 사육소 등에서 동물을 대여하여 실습을 하는 등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보호 행위를 위한 행위’는 적극적인 동물 학대 행위는 아니지만 미연에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할 수

-
- 5)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생략)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라. (생략)
-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생략)
-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생략)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개정안만으로는 이를 예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동물보호행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등을 보완하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혹은 이를 삭제하여 학대행위 규정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1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u>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u>.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1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u>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u>.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동물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동물보호법」 상 부재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3